

등록번호	주택과-4587
등록일자	2015.2.9.
결재일자	2015.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주택행정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남호진	김창배	권순우	이진형	김찬곤	02/10 최창식
협 조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시설과장	안춘자 함석주 이동훈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도시관리국
주 택 과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주택법 제43조제9항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II 추진 방향

-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 지원
- 재해예방에 따른 재난안전시설 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 및 관리비 절감 시설 지원 강화
-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강화

III 추진 개요

■ 지원 대상 : 54개 단지

-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20세대 이상)대상 공동주택 (조례 제4조)
- 공동주택 현황 [붙임 1] (2014. 12월 현재)

구 분	총계		의무관리		임의관리		비 고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54	19,859	16	12,737	38	7,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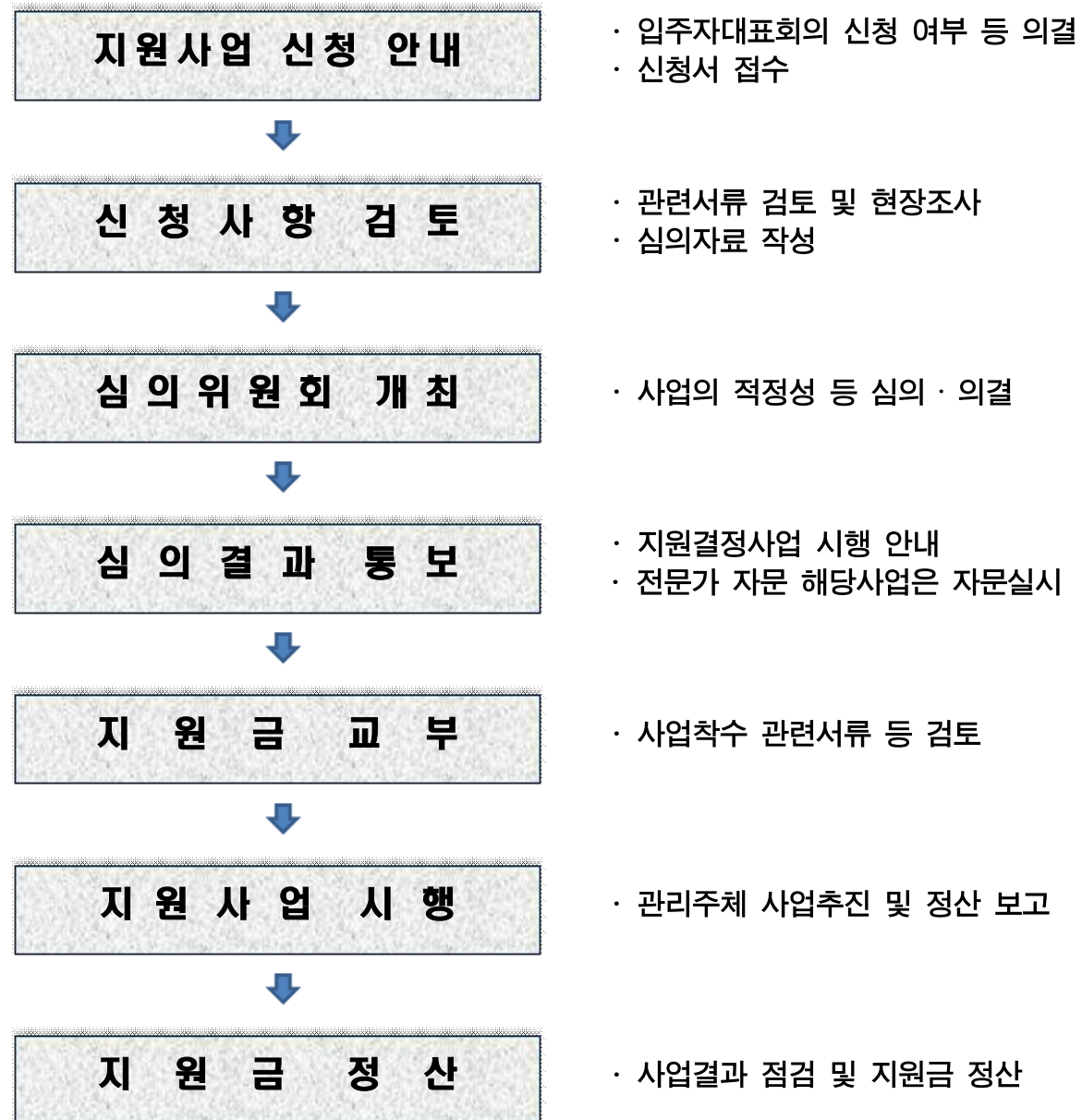
■ **지원 분야**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지원 비율** : 당해 사업비의 50~70% 지원 [붙임 2]

※ 지원사업 단지별 상한액 : 30,000천원(연간 예산액의 20%이내)

■ **지원 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사업비 지원

■ 지원 절차



IV

추진 실적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지원단지	지원금액	비고
2006	4개 단지	222,167	단지별 세부내역 [붙임 3]
2007	10개 단지	477,264	
2008	10개 단지	899,177	
2009	13개 단지	692,497	
2010	8개 단지	552,724	
2011	16개 단지	180,451	
2012	14개 단지	161,049	
2013	18개 단지	144,386	
2014	19개 단지	137,187	
총 계		3,466,902	

2014년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분야	심의결정액	지원액	비고
1	어린이놀이터 보수	55,734	53,424	
2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28,297	28,297	
3	단지외부출입구 도로보수	25,000	12,500	
4	등의자 교체	12,712	11,408	
5	계단안전난간대 설치	6,156	6,156	
6	LED 교체	3,893	3,097	
7	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3,234	2,772	
8	화장실 공사	1,553	1,553	
9	운동시설 도색	907	907	
10	자전거거치대 설치	834	834	
11	계단화강석 보수	600	600	
12	옥외보안등 전기료	15,801	15,639	
	계	154,721	137,187	

1. 지원사업 안내 및 접수

- 신청안내 홍보
 - 54개 단지 안내문 발송 :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등
 - 사업시행 안내문 단지 내 게시 유도
 - 중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신청 : 공동주택지원 신청서 [붙임 4]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내용, 효과, 현장사진, 도면 등
 - 총사업비 및 산출근거,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 사업성실추진 서약서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접수기간 : 2015. 2. 23. ~ 3. 20.

2. 신청사업 검토

- 사업분야별 검토부서 지정
 - 도로·보도, 보안등 : 도로시설과
 - 하수도, 재난안전시설 : 안전치수과
 -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 공원녹지과
 -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보육 및 육아시설 : 여성가족과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신청사업의 타당성·적법성 여부
 -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와 문제점, 시설노후화 정도 등 확인
 - 검토결과 심의자료 작성

3. 심의위원회 개최 : 4월중(별도계획 수립)

- 위원 현황 [붙임 5]

구분	당연직				위촉직		
	계	위원장	국장	부서장	계	구의원	민간 전문가
인원	5	1	1	3	6	2	4

- 심의 및 의결사항

- 지원신청 사업분야별 지원기준에 따라 심의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 우선순위 · 지원금액 등
-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심의·의결 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시설 보수사업 등 우선 지원

4.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 금액, 조건 등
- 전문가 자문 실시 대상 사업 지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계 법령 준수 안내

- 전문가 자문 해당사업 자문실시 :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공사계약 체결 전 실시
- 견적서(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검토
- 공사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여부 등 자문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자문결과서 첨부

5.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신청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붙임 6]

-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 후 신청
- 계약서, 공사내역서, 입찰관련 서류, 자문결과서 등

- 지원금 교부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공동명의 계좌로 교부

6. 지원사업의 시행

- 사업개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붙임 7]
 - 각 관리주체가 직접 사업시행 및 감리
 -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
- 지원금의 사용 방법
 - 지원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 별도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구분 회계처리
 -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 집행잔액 발생 시 구에 반납
- 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7.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붙임 8]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및 추진실적 제출
 - 준공검사조서, 계약서(내역서), 지출증빙서류, 전후사진 등
- 사업시행 결과확인 및 정산
 - 단지별 사업결과 현장조사 및 정산

VI 추진 일정

- 2015. 2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5. 2월 ~ 3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15. 3월 : 사업분야별 현장조사 및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통보
 - 2015. 4월 ~ 10월 : 지원금 교부, 지원사업 시행 및 정산 보고
- ※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수시 점검

VII

소요 예산

■ 지원사업비 : 150,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 민간위원 참석수당 : 400천원 (4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1. 공동주택 현황 1부.
 2. 공동주택 지원기준 1부.
 3. 연도별 공동주택별 지원현황 1부.
 4.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
 5.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명단 1부
 6.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7.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1부.
 8.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1부.